

**전시 성적 강제 피해자 문제의 해결의 촉진에 관한 법률안(가칭)
정책요강에 관한 의견**

1. 제2 정의 2의 “그 뜻에 반하여 모집된”에 관해

이 부분은 일본군‘위안부’ 피해자에 대해 ‘공창’이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주장을 정당화하는 것은 아닌가? “전시에 있어서의 성적 강제”를 이렇게 한정할 경우, 결국 “그 뜻에 반”한 것이었는지 아니었는지를 판정할 필요성이 생기며, 그 판정에 있어서 돈을 받았는지의 여부가 중요한 쟁점으로 떠오를 수 밖에 없는데, 이것이 과연 바람직한가? 일본군‘위안부’ 제도는 문자 그대로 성노예이며, 돈을 주었는지 주지 않았는지는 본질이 아니다. 그럼에도 “그 뜻에 반하여”라고 한정하는 것은 비본질적인 부분에 의해 법률안의 취지 자체를 무색하게 할 위험성이 있다. 따라서 삭제되어야 할 것이다.

2. 제2 정의 2의 “구호적법의 규정에 의한 본적을 자기고 있었던 자 이외의 자였던 자”에 관해

1) 이 부분은 결국 일본인을 배제하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. 하지만 일본인이라고 해서 성노예가 아니었던 것은 아니다. 일본인을 굳이 배제해야 할 필요성이 어디에 있는가?

2) 위의 자에는 재일한국인이 포함되는가? 포함된다면 문제가 될 것이다.

3. “필요한 조치”에 관해

법률안은 “필요한 조치”의 “내용 및 그 실시의 방법”을 “기본방침”(제4)에서 정하도록 함으로써 조치의 내용을 열어 두고 있지만, 다른 한편으로 제3의 1에서 “사죄의 뜻을 표”하는 것과 제3의 2에서 “금전의 지급”, 그리고 제4의 2의 ①에서 “실태를 해명하기 위한 조사”를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있다.

이것은 조치의 내용을 “사죄”와 “조사”와 “금전의 지급”에 한정시킬 위험이 있는 것 아닌가? 다시 말해 피해자 등이 요구해 온 위령비의 건립, 역사 교육 및 책임자 처벌 등을 배제시키게 되는 것이 아닌가?

만일 그렇지 않다면 이들에 대해서도 법률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다.

4. “전시 성적강제 피해자문제 해결 촉진회의”에 관해

이 기구가 사실상 이 법률안의 성패를 좌우할 핵심적인 기구라고 할 수 있는데, 이것을 “총리부”에 설치하고 “내각총리대신”을 회장으로 “관계 행정기관의 장 중에서 내각총리대신

이 임명"하는 자를 위원으로 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가?

오히려 일본의 "국권의 최고기관"인 국회에 관계 기구를 설치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 것은 아닌가? 이와 관련하여 일본의 일각에서 논의되고 있는 「국립국회도서관법」의 개정에 관한 법률안과 이 법률안은 어떻게 다르며, 어느쪽이 문제의 보다 철저한 해결을 위해 더 바람직한가?